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83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전진숙·박해철·민형배

박 정・김남희・이정문

윤후덕 • 박균택 • 정준호

김선민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령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중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 · 운영할 것
 - 가.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작업자가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 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다. 차량 배출가스가 작업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작업자에게 지급할 것
-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시급하게 처리할 사유가 있거 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환경부령으

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작업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4. 그 밖에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	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	②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u>는 자</u> 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야 한다.	수집·운반하는 자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u>한다.</u>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작업자가 적재 장
	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
	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
	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 차량 배출가스가 작업자
	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
	출가스 배기관(차량이 내
	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진개(塵芥)차량이거나재활용품전용저압축형차량인경우만해당한다)

-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보호장구를 작업자에게 지급할 것
-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시급하게 처리할 사유
 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환경부렁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u>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u>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작업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